

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 통합 공고(1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입주 및 국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2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년 1월 2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분양, 벤처)기업, 전국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사업별 지원대상 참고
- 공고기간: '22. 1. 27.(목) ~ '22. 2. 25.(금), (30일간)
- 접수기간: '22. 2. 11.(금) ~ '22. 2. 25.(금), (15일간) * 마감(18시)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을 통해 신청·접수
- 사업기간: 세부 지원분야에 따라 상이 * 사업별 지원분야 참고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단, 권역별산학연기술지원사업은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분야·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붙임 1> 참조,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세부 지원항목에 따라 상이 <붙임 1> 참조
- 지원비율: 업체별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 '17~'21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단, 권역별산학연 기술지원 금액은 누적지원금액에서 제외)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구분	기업부담비율			
	지원금액(누적)	2억원 이하	2억원 ~ 5억원	5억원 초과
입주기업		30%	40%	50%
단지 외 기업		40%	50%	60%
※ 단, 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 사업은 기업부담비율 25% (현금 20, 현물 5)를 단지 내 외 기업에게 동일 적용				

* 기업별 누적지원금액 문의: 박정섭 차장(063-720-0577)

2. 지원분야 *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 참조

순	지원분야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대상	비고
			사업비(백만원)	기업부담비율		
1	공동기술개발	최대 7개월	1,529	최소 30%	입주기업 단지 외 기업	1차 공고
2	권역별산학연기술	최대 6개월	600	-	입주기업 단지 외 기업	
3	식품기업시설인증	최대 6개월	300	최소 30%	입주기업	
4	기업공동사업	최대 8개월	140	최소 30%	입주기업 단지 외 기업	
5	소스·전통장류혁신성장	최대 8개월	360	최소 25% (현금20,현물5)	입주기업 단지 외 기업	2차 공고 (4월 예정)
6	제품마켓 테스트	최대 8개월	375	최소 30%	입주기업 단지 외 기업	

*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분양, 벤처)기업, 전국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사업별 지원대상은 해당공고문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붙임 2> 참조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2. 1. 27.(목) ~ 2. 25.(금)(30일간)
- 접수기간: '22. 2. 11.(금) 9:00 ~ 2. 25.(금) 18:00 까지(15일간)
 -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통합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불가)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①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권한전환신청 → ④ 권한전환[식품진흥원 담당자] 완료 후, 사업신청 → ⑤ [기업지원]탭 클릭 후 [기업사업정보]탭 클릭 → ⑥ [모집공고]탭 클릭 후, 해당사업 신청 → ⑦ [지원관리]탭에서 신청현황(사업명, 신청금액, 신청기간 등)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팝업창 【통합공고 사용매뉴얼】 영상 참고

○ 제출 서류 * 사업별 공고문내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 사업 신청서 또는 계획서 *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스캔본(원본대조필)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3> 참조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원본대조필)
기타	① 중소기업증명서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만 제출) * 중소기업증명서 제출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1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 기타매출은 제외하고 산정) ● 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산학연협의체 구성 증빙서류 각 1부(권역별산학연기술지원사업의 경우만 제출) ③ 시설인증 견적서(식품기업시설인증지원사업의 경우만 제출)

5. 사전상담(필요시) * 사전상담은 필수사항이 아님(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 목 적: 식품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사전상담 신청기업의 기술지원 계획서(초안) 내용이 지원항목에 부합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계획서 오류로 인한 신청기업의 불이익을 예방
- 대상사업: 3개사업 * 공동기술개발, 권역별산학연기술, 소스·전통장류혁신성장
- 상담기간: (신청) 2. 3.(목) ~ 2. 10.(목) / (상담) 2. 14.(월) ~ 2. 23.(수)
 - * (상담신청 시 유의사항)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초안이 구비된 경우에만 사전상담 신청 및 상담진행이 가능함
- 신청방법
 - 사전상담 신청기간 내 사업 분야별 사전상담 접수담당자(9.담당자 연락처 참조)에게 상담 신청서(붙임 4)와 지원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이메일 또는 전화 접수)

○ 사전상담 진행

- 사전상담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및 상담 방법(대면, 비대면) 협의한 후 상담 진행

6. 선정평가 및 기준

○ 선정평가 * 세부 평가항목은 신청사업공고문 참조

- 서류평가(32~34): 참여제한 해당여부, 신청서류 미비, 부적합한 내용 등 검토
 - 사전평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붙임 5>참조
 - 내·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가완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 발표평가(3.14.~3.18.): 과제책임자 발표 * 발표시간 등은 해당사업 공고문 참조
 - 내·외부 평가위원 5~7인 내외로 구성 및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인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치)기업에 우선지원하며, 기타 하위 동점사항은 세부 사업공고 참조

○ 선정결과: 선정평가 이후 안내메일 송부(3.23.예정)

○ 가·감점 사항 * 세부 가·감점 기준은 <붙임 6> 참조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우수 및 불량 판정 건수별로 산술 평균 점수에서 1점씩 가감함
- 우수 및 불량판정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수발신 공문, 기안 등)를 근거로 함

7. 추진절차

구분	내용	해당사업	비고
사전 상담 (필요시) (2.3.~2.23.)	· 사업별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 신청 (8. 담당자 연락처 및 붙임 4. 참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초안이 작성된 기업에 한함 · (신청 23(목)~210(목) / 상담 214(월)~223(수))	· 공동기술, 권역별 산학연기술 · 소스전문종류 혁신성장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신청·접수 (2.11.~2.25.)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fiis.foodpd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신청	공통	신청기업
서류평가 (3.2.~3.4.)	· 내·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서류 평가 · 사전검토를 통해 서류 미비 또는 신청서류 미비, 부적합한 사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일: 3.8. 예정	공통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발표평가 (3.14.~3.18.)	·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 결과통보일: 3.23. 예정	공통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협약 체결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선정기업에 한해 협약서 양식 별도 송부예정	공통	신청기업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 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공통	식품진흥원 컨설턴트 신청기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2시점)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 사업별 실시 유무 상이(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공통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종료 15일전)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공통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기업부담금 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공통	신청기업
사후관리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공통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세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2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외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7>참조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이후 “사업 교육(참여기업용)”을 **최소 1회 참가**해야하며, 미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담당자에게 있음

*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될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담당분야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관련	고민지 대리	063-720-0575 alsk6855@foodpolis.kr
홈페이지 기업권한전환	서세미 대리	063-720-0578 tpal32@foodpolis.kr
공동기술 개발사업	맞춤형 식품포장 개발	최정욱 과장 cjwy@foodpolis.kr
	레시피 개선	김기화 과장 kkh0109@foodpolis.kr
	관능평가	김기화 과장 kkh0109@foodpolis.kr
	유효성평가	여광은 과장 yeoke@foodpolis.kr
	안전성평가	여광은 과장 yeoke@foodpolis.kr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 컨설팅	여광은 과장 yeoke@foodpolis.kr
	지표성분 분석	유이람 대리 yuar@foodpolis.kr
	생산공정 표준화 시제품 개발	정다운 대리 daun@foodpolis.kr
	HMR식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	이광진 대리 gwangjin@foodpolis.kr
	기능성제형 기술개발	남영주 과장 nyj1612@foodpolis.kr
권역별 산학연 기술	식품패키징	유검근 대리 ygg8014@foodpolis.kr
	품질안전	백윤수 과장 bys7932@foodpolis.kr
	기능성평가	송준수 대리 ok240007@foodpolis.kr
	원료표준화	유이람 대리 yuar@foodpolis.kr
	파일럿플랜트	정다운 대리 daun@foodpolis.kr
	HMR산업화	이광진 대리 gwangjin@foodpolis.kr
	기능성제형	남영주 과장 nyj1612@foodpolis.kr
식품기업시설인증	김한결 대리 khan694@foodpolis.kr	
기업공동사업	박정섭 차장 park962344@foodpolis.kr	
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	박민지 대리 mjpark@foodpolis.kr	
제품마켓테스트	김기화 과장 kkh0109@foodpolis.kr	

지원분야 및 지원항목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1. 공동기술 개발	맞춤형 식품포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포장 개발 및 재질적용 평가 - 신규/기존 제품 소비자용 맞춤 포장개발 - 탄소저감(친환경 소재 포장경량화 등) 포장 적용 평가 - 포장 소재 개발 지원(친환경성, 기능성 등) 	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안전성 평가 및 포장개선 - 국내외 규격에 따른 유통 시뮬레이션 및 개선사항 도출에 따른 포장개선 실시 - 개선 전·후 유통안전성 비교 	
	레시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시피 개선 - 제조공정 점검 및 개선 - 원·부재료 조사 및 선정 - 개선제품 Lab 테스트 및 시제품 제조 - 개선 전, 후의 소비자기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검사 - 원·부재료의 특성 분석 및 개선 - 공정품 및 개선제품 품질검사 	
	관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시장성 분석] · 전문패널조사 · 소비자패널조사 - 제품의 관능적 특성을 정성적·정량적 평가 또는 소비자의 선호도·기도도 평가 	
	유효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지방감소, 장건강, 호흡기건강, 뼈건강, 근력개선, 혈당조절 	
	* 사전상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 기능성 항목(인지기능, 치아건강 등)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기능별정보 참고 	
	안전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회독성 - 원료를 실험동물에 1회 투여 시 개략의 치사량 평가 진행 · 유전독성 - (소핵평가) 실험동물 골수세포 혈구분석 진행 - (염색체이상)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여 염색체 구조 및 수적이상 검사 진행 - (복구돌연변이) 백타이를 이용하여 돌연변이 검사 진행 	
	기능성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표시식품 등록 컨설팅	분석지원	1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원료개발 시 지표성분 검토] · 지표성분 검토 - 지표성분 후보물질 탐색 - 지표성분 최적추출법 검토 - 지표성분 확인 (정성분석) - 지표성분 정량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법 검증 - 지표성분 분석법 개발 - 분석법 검증 (validation) 		
		생산공정 표준화		·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의 생산 공정 표준화 등
		시제품 개발		· 원료소재가공(발효정제, 추출농축, 살균, 건조), 고형제형, 특화기술(초고압살균, 분체살균) 등 지원
		HMR식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MR식품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 대체육, 식품소재 개발 관련 기술 - 미생물 제어, 레토르트 살균 기술, 유통기한 연장 등 품질을 개선 · HMR 상품화 지원 - 편의식, 밀키트 등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 제품 개선 및 리뉴얼 상품화
2. 권역별 산학연 기술	기능성제형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식품 등 제형 기술 개발 - 제형 적합성 및 안정성 평가 지원 - 제형 적용 소재 최적 공정 개발 지원 	100백만원	
	식품패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포장산업 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 소비자 클레임, 유통 부적합 등 포장 개선 기술적 지원 		
	품질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령친화식 기반 지원사업 - 고령친화식의 물성, 영양, 공정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기술적 지원 		
	기능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상품 등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및 실증 지원 ·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파일럿플랜트	· 시설인증 및 위생안전 분야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HMR산업화	· HMR 식품, 대체육 등 미래유망 식품기술 개발 지원		
	기능성제형	· 기능성식품 제형의 공정(제품) 개선 지원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3. 식품기업 시설인증	시설인증	• HACCP 개념설계, 유기가공, 전통식품 인증	4백만원	
		• HACCP 인증 컨설팅	소규모	7백만원
			일반	12백만원
		• FSSC22000, ISO22000	12백만원	
		• GMP 개념설계	5백만원	
		• GMP 인증 컨설팅	12백만원	
	• 스마트공장(HACCP)**	20백만원		
사후관리	• 시설인증분야 사후관리 -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5백만원		
4. 기업공동사업	공동물류	• 회원사 간 혼합물류를 구성하여 공동배송하는 물류비지원(운송, 검역, 샘플배송, 창고 등 제조사의 물류 항목 지원)	10백만원	
	공동구매	• 회원사간 공동 원료 구매 지원(원료·반가공, 부자재 구매, 국산원료 공동구매 지원)	10백만원	
	공동브랜드	• 회원사간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상표권 지원(브랜드개발, 디자인컨설팅, 홍보비, 상표권 등)	20백만원	
	공동생산	• 회원사 간 시제품 생산 등 생산비용 지원(위탁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장비 활용비 등)	10백만원	
5. 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장류 및 발효원료 관련 제품 및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장·고추장·간장 등을 활용한 소스 개발, 전통 식초를 활용한 샐러드 드레싱 개발 등 • 국산 농·축·수산물 원료 활용한 소스류 및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농산물 활용한 ○○농축액 개발, 국산 굴을 활용한 굴소스 대체품 개발 등 • 소스류 기능성 및 품질 향상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대체제 활용한 저염 소스 개발, 당류 대체제 활용한 당뇨환자용 소스 개발 등 • 소스 및 식품 위생 품질 향상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미생물 저감화, 곰팡이 독소 저감화, 발효 안정화, 천연 보존제·항산화제 개발 등 • 소스 및 식품 유통 안정성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공정 최적화를 통한 유통기한 연장, 천연 보존제를 활용한 변패 억제 조건 개발 등 	24백만원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6. 제품마켓 테스트	제품개선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용도가 높은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제공 ① (시장분석)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환경 및 경쟁제품 분석 ② (소비자조사) 제품 주 소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하여 미충족수요 및 잠재육구 조사 ③ (전문가컨설팅) 유통채널 입점경력을 보유한 바이어 또는 제조기술 등 적합 전문가를 매칭·상담 ④ (제품전략설계) 제품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제공 	12백만원
※ 별도공고 예정 ('22.4월)			

중복수혜금지약서

당사는 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 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평가,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접수 및 평가, 과제 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 기재된 해당자 모두 서명 요망

순	성명	서명
1		
2		
3		

【붙임 4】

(공동기술개발사업, 권역별산학연기술) 사전상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명칭(상호) :	분야(업종) :
업체정보	주소	

상담
필요
내용

위와 같이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기술지원계획서(안)
-------------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붙임 5】

서류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	-----	-------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검토 결과
필수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1	적합 / 부적합 / 미제출
	제출서류2	
	제출서류3	
	제출서류4	
	

평가항목	과제 내용	검토 결과
과업 적합성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계획서 내 내용 요약	검토 결과 작성

사전검토 결과	선정평가 대상 적합	선정평가 대상 부적합
	○	○

* 필요에 따라 양식 내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가·감점 기준

구분	기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평가일	2년	3점
	식품진흥원 푸드마켓 입점기업의 경우	입점일	-	1점
감점 부여 항목	중간평가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과제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한 경우	결과 통보일	3년	5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과제추진 또는 정산 관련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 성실히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과제책임자 - 그 밖에 과제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과제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참여기업 또는 협동수행기관의 장은 식품진흥원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별표6] 사유별 제재 기준

사유별 제재 기준

참여제한 제재 사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 ⁶⁾			비고
	1회	2회	3회 이상	
1.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가. 중간평가 결과 “중단” 인 과제	감점 3점 (2년)	1년	1년	
나.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감점 3점 (2년)	2년 이내	3년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 ¹⁾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 ⁵⁾ 한 경우 ²⁾	감점 5점 (3년)	2년	3년	
4. 정당한 사유 ³⁾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²⁾	2년	2년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⁴⁾	2년	2년	2년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8.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